

인천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가단2648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섭

변 론 종 결 2022. 3. 30.

판 결 선 고 2022.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6. 1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인천지방법원 2019. 7. 2. 접수 제2404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10. 17. D 주식회사와 사이에 60개월간 월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이 정한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D 주식회사는 2019. 11. 20. 주식회사 E에게, 주식회사 E는 2020. 12. 10. 원고에게, 각 위 리스계약에 기한 채권을 순차 양도하고, 각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C의 아버지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6.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C, G이 있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6. 18.경 망인 소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피고는 2019.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마. 2019. 6.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93,000,000원이고, 위 부동산에는 2015. 3. 17.자로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110,400,000원, 채무자 망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으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92,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는 망인으로부터 2005. 9. 3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60,000,000원을 증여받고,

2006. 11.경에는 5,300,000원을 증여받았다.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C는 더이상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수한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판단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참조). 또한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가) 공동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그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C, G이 있었으므로, 그 법정상속분은 피고 3/7, C, G이 각 2/7가 된다.

나)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①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019. 6.경 당시 193,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②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은 2005. 9. 29.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I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다음날 위 60,000,000원을 C에게 송금한 사실, 이후 망인은 2015. 3. 17. H조합으로부터 9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H조합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날 I에는 대출원리금 채무 66,315,376원을 자기앞수표로 상환하면서 I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드러나는 망인의 채무관계와 증여 액수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2005. 9. 30. C에게 송금한 60,000,000원은 C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C가 2006. 11. 30. 망인으로부터 입금받은 5,300,000원도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6. 11. 30. C에게 5,3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드러나는 망인과 C의 금전거래내역(C는 2006. 7.부터 2007. 7.까지 망인에게 매월 350,000원씩을, 2007. 7. 11.에는 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과 액수 등을 감안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5,300,000원이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평가할 만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이에 기초하여 C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 구체적 상속분: 1,432,728원 [= {상속재산 가액 193,000,000원 + 특별수익액 75,194,180원 (= 60,000,000원 × 103.877 / 82.887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법정상속분 2/7 - 특별수익액 75,194,180원]

다) 재산분할 결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피고는 2019. 6. 18.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단독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2019. 10. 8.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92,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 인수로 인하여 자신의 상속채무를 면제받아 26,285,714원 (= 92,000,000원 × 2/7)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라) 소결론

결국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특별수익을 감안한 구체적 상속분은 1,432,728원에 불과한 반면, 재산분할 결과로 얻은 이익은 26,285,714원에 이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할협의를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엽

1)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참조), 그 특별수익한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특별수익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특별수익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특별수익한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또한 이때의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C가 증여받은 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특별수익재산액×(상속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여야 한다(GDP 디플레이터 수치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